

2023년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 범위 안내

◆ **보장내용** :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망	익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익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깽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익산시민이 깽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300만원
깽소니·무보험차 상 해후유장해	익산시민이 깽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사회재난 사망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익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자연재해사망	익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익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 상해사망	익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익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익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익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5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일반상해 사망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타 항목과 중복보상가능
일반상해 후유장해	익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타 항목과 중복보상가능

※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음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항목 중복 적용 예시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 재난·사회 재난 사고,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 1000만원(한도)

⇒ 우리시에 직접적인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 보장항목과 중복 적용

- 익사 사고, 물놀이 사고, 가스 사고, 강도사고, 추락, 낙상, 끼임, 매몰 사고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후유장해(산업재해 사고포함) 등 : 500만원(한도)

⇒ 우리시에 직접적인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일반상해항목 단독 적용

◆ 보장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감전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 제1호의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 발생한 경우를 말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 한함.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해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 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보험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 (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개 물림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 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함.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은 제외 (제1급~제3급 감염병 중 2급의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카바네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 원숭이두창 / 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 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0)%
2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9급	보험가입금액의 (0)%
3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0)%
4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0)%
5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0)%
6급	보험가입금액의 (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0)%
7급	보험가입금액의 (0)%	14급	보험가입금액의 (0)%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